



의 안 번 호	제119호
회 의 연 월 일	2024. 7. 1. (제541회 회의)

심의 · 의결 사항

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
(대통령령)

제 출 부 서	경 찰 청 (경무인사기획관)
제출연월일	2024. 6. 20.

교육정책담당관, 교육기획계장

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공무원 임용령」에서는 교육훈련을 마치고 실무수습 중인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게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

「경찰공무원 임용령」은 교육훈련을 마치고 실무수습 등 진행 중인 시보임용예정자에게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

「공무원 임용령」과 동일하게 교육훈련을 마치고 실무수습 등을 하는 시보임용예정자에게도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 토의과제

없 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

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 제목 “(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)”을 “(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훈련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후단 중 “교육훈련”을 “훈련”으로, “봉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”을 “봉급에 상응하는 금액(교육훈련기간은 그 금액의 80퍼센트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) ①임용권자 또 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 찰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 에게 일정 기간 교육훈련(실무 수습을 포함한다)을 시킬 수 있 다. 이 경우 시보임용예정자에 게 <u>교육훈련</u> 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계급 의 1호봉에 해당하는 <u>봉급의 80</u> <u>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</u> 등을 지급할 수 있다.	제21조(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<u>훈련</u>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<u>훈련</u> ----- ----- ----- <u>봉급에 상당하</u> <u>는 금액(교육훈련기간은 그 금</u> <u>액의 80퍼센트)</u>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정책담당관	
연 락 처	02 - 3150 - 1763